제3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국찬 의원 외13명 발의(의안번호 제82호)

2026. 10.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2호

○ 발 의 자 : 이국찬 의원 외13명

○ 발의일자 : 2026년 10월 2일

○ 회부일자 : 2026년 10월13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때 관할 경찰서장과 설치 장소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CCTV가 범죄 취약지역에 실질적으로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CCTV 설치 시 경찰서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4 및 제74조의5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Ⅲ. 검토의견

1. 개정목적

○ 본 개정안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설치장소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고정형 영상종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설치 과정에서 관계기관인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협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cctv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나. 목적 조문 정비 (안 제7조제2항)

- 개정안 요지 :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장소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견수렴) (생 략)	제7조(의견수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설치장소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범죄예방 목적의 CCTV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과 설치장소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경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범죄 발생 및 취약지역 등에 관한 정보를 CCTV설치 위치 선정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범죄예방 목적 CCTV설치에 대하여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의 시급성이나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협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CCTV설치에 관한 시장의 집행권한 자체를 경찰서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장소 선정 과정에서 관계기

관의 의견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타 지방자차단체 관련 입법 현황】

지 역 명	법 령 명	제·개정	조 문
부 천 시	영상정보처리기기및CCTV통합관제센터설치·운영조례	개 정	제27조2항
안 산 시	안 산 시 C C T V 설 치 및 운 영 조 례	제 정	제5조2항
송 파 구	서울특별시송파구CCTV설치및송파CCTV통합관제센터구축·운영조례	개 정	제7조2항
안 성 시	안 성 시 C C T V 설 치 및 운 영 에 관 한 조 례	개 정	제5조1항
홍 천 군	홍천군CCTV설치및통합관제센터구축·운영조례	개 정	제7조2항
횡 성 군	횡 성 군 C C T V 및 통 합 관 제 센 터 운 영 조 례	개 정	제6조3항
순 천 시	순 천 시 C C T V 설 치 및 운 영 조 례	개 정	제4조2항
강 동 구	서 울 특 별 시 강 동 구 방 범 용 C C T V 설 치 · 운 영 조 례	개 정	제4조2항
마 포 구	서울특별시마포구영상정보터리기기설치및CCTV통합관제센터운영조례	제 정	제6조2항
동 작 구	서울특별시동작구CCTV통합관제센터구축및운영조례	개 정	제5조2항

- 타 지자체에서도 범죄예방 목적 CCTV설치와 관련하여 ‘경찰 협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음

5. 종합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장소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나. 지역의 범죄 취약지역 및 치안수요 등을 CCTV설치과정에서 부터 반영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항임

다. 현행 조례에서 CCTV 설치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CCTV운영위원회에 관할 경찰서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를 폐지나 변경이 아닌 CCTV설치 장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치안과 관련된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라. 현재 타 시·군 관련 조례에서도 범죄예방 목적을 위해 cctv설치시 '경찰협의' 등과 같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1】

마.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범죄예방 목적의 CCTV설치장소에 대해 선정과정에서부터 관할 경찰서의 현장 치안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